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9. 6 선고 2023가단5290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

담당 변호사 전수려, 방인석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8. 23.

판 결 선 고 2023. 9. 6.

주 문

1.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2023. 1. 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3. 1. 10. 접수 제18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사실관계

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,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.

- 1) 원고는 1997. 4. 3. D과 사이에, D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동차 할부대금 채무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, C, F은 D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- 2) D이 위 자동차 할부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주식회사 E에 10,434,0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- 3) 원고는 D, C, F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및 연대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. 4. 10. “D, C,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,295,095원과 그중 10,434,071원에 대하여 1998. 7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는 이행권고결정(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525206)을 받았고, 이는 2008. 4. 29. 확정되었다(이하 원고의 D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‘이 사건 구상금 채권’이라 하고, C에 대한 위 연대보증금 채권을 ‘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’이라 한다).
- 4) C는 2023. 1. 9.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21분의 14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하고 2023. 1. 10. 피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
나. 판단

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분의 14 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

해당하고, C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소멸시효항변

피고는,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.

원고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8.

4. 29.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그러나 한편, 갑 제4호증의 2, 제5호증의 1, 2, 제6호증,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D에 대한 개인회생절차(의정부지방법원 2017개회3722)에서 2017. 1. 24.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.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, 제589조 제2항,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9다235528 판결 참조),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7. 1. 24. 중단되었고, 위와 같은 시효중단의 효력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에도 미친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

1)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 이 사건 부동산은 C 등이 G로부터 상속한 부동산이다. G가 사망한 후 피고가 개인적인 사업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7,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다. 이에 G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. 이처럼 C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줄이기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, 이 사건

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2) 을 제3호증, 제4호증,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. 이 사건 부동산은 종래 G 소유였다. G는 2011. 5. 13.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7,000만 원을 받고 임대하였다. G가 2016. 6. 10. 사망함에 따라 C, I가 각 21분의 7, J가 21분의 3, K, L이 각 21분의 2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. 피고는 2020. 3. 23. H에게 합계 71,453,360원을 지급하였다. I는 2022. 4. 15.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분의 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J는 2022. 5. 11. L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C는 2023. 1. 10.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K, L은 2023. 1. 10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분의 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.

3)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G의 상속인들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. 또한,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재산 액수보다 채무 액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행위를 한 이상 그로써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,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 관한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시지가보다 적은 액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C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이 아니라 원물반환, 즉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이유빈

별지

부동산목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경기도 파주시 , 아파트 동

[도로명주소]

경기도 파주시

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층래브지붕 18층 아파트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건물의 번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

면 적 : 59.96㎡

(대지권의 표시)

토지의 표시 1. 경기도 파주시 대 5900㎡2. 경기도 파주시 대 7㎡

대지권의 종류 1, 2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5907분의 25.2

- 이 상 -

